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6호 2016년 12월 pp.79~109
한국세무학회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최원욱* · 임현지**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이 속한 영업환경의 특성 중의 하나인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초과이익의 기회가 증가한다.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의 지출이 매출증가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에서도 한도이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매출액과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였을 때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달리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경우에도 한도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와 매출액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를 제외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의 수익관련성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 상 확립화된 접대비 한도규정을 보완할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면,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이 조세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접대비, 수익관련성, 산업집중도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wonchoi@yonsei.ac.kr, 주저자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 공인회계사, hyulim00@gmail.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5년 12월 31일 1차수정일 2016년 7월 22일 2차수정일 2016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3일

I. 서 론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접대비 또한 업무와 관련한 순자산의 감소액으로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기업의 부정부패와 관련되거나 과소비성 등의 불건전한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홍정화·이태호 2004 ; 최원욱 외 2005b). 따라서 접대비 한도 규정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로 인해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상 접대비 한도액 규정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 또는 기업이 처한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오히려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에 반하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송쌍중 1995).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는 기준금액 1,200만원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된다(법인세법 제2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1,800만원(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400만원)으로 하여 한도를 늘려주고 있고,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비율의 경우도 수입금액이 증가할수록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과거 여러 번의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으며, 이에 따라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는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원욱 외(2005b)가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을 통한 정부의 접대비 지출 관련 정책 방향과 기업의 실무상 접대비 지출방향에 관하여 두 가지 상반된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규제 관점에서 볼 때,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와 무관하게 접대비를 과다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접대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 인정한도가 너무 작거나 손금산입한도 산정기준의 획일성이 기업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들이 세제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만약 후자의 이유에 의해 기업들이 한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현행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게 된다. 세법상 한도 내의 접대비로도 충분히 목표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더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는 것이 기업 수익성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안이 되는 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특성 중 어떤 요소를 접대비 한도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 중 기업이 속한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장(market)에서의 경쟁 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접대비의 지출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이 속한 산업의 집중도 또는 경쟁정도에 따라 동일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접대비 지출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접대비의 수익관련성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 이하 HHI로 약칭한다)를 이용하여, 산업의 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에서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산업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산업에 속한 기업은 초과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많다(Allen and Phillips 2000 ; Ali et al. 2014). 그렇다면 소수 기업에게 시장점유율이 집중되는 과점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 한 단위의 지출이 창출하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산업집중도가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보다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 내 집중도가 증가함에 따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산업집중도가 높을 때는 접대비 한도초과기업의 접대비의 수익관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최원욱 외(2005b)에 의하면 접대비를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한 기업의 경우 세법상 한도내에서 지출한 기업에 비해 접대비 외의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접대비의 매출관련성이 약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만약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산업 내 집중도가 증가함에 따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증가한다면,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에서도 접대비의 매출공헌도와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공헌도의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의 경우 산업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에서의 접대비가 매출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확일화된 접대비 한도규정을 보완할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가 없는 현실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산업의 집중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이 조세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접대비의 지출이 수익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접대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제상 불이익을 부담하면서도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매출의 증가에 공헌하고 있는 접대비에 대해 손금산입의 세

제혜택이 배제된다면,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점산업에서의 전가효과는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의 기회가 많은 경쟁적 산업에서보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이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접대비 관련 규정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표본을 선정하고 실증분석 모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제Ⅵ장에서는 추가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접대비 관련 세법상 규정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기는 하지만 접대라는 비용의 본질적 성질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두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¹⁾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한도와 상관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세법규정은 접대비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 차례 개정되었으며, 1998년 말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접대비 한도액} &= 1,200\text{만원}(\text{중소기업은 } 1,800\text{만원}^2) \times \text{당해사업연도 월수}/12 \\ &+ (\text{매출액} \times \text{적용률} < \text{표 1}>) \end{aligned}$$

-
- 1)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 2) 중소기업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400만원으로 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표 1〉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률

매출액(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매출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만을 한도액으로 본다(법인세법 제25조).

수입금액에 단일률을 적용하게 되면 수입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접대비 손금한도액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증가할 때 접대비 한도액은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세의 수직적인 공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큰 기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만 한도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규정은 2006년부터 폐지하였다. 해당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기업의 업무 환경이나 산업 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액 기준에 의해서만 산정된다. 또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한도 적용률이 감소하므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접대비도 증가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큰 규모의 기업이 작은 규모의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국내의 접대비에 관한 선행연구는 접대비 지출실태에 대한 현황연구(오기수 2001 ; 손원의 2013)와 접대비 관련 규정이 납세자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오기수 2000 ; 오기수 2002 ; 최원욱 · 전병욱 2010 ; 고운성 · 이진환 2011), 그리고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수익관련성에 관한 연구(최원욱 외 2005b)가 있다.

먼저 접대비 지출실태에 관한 현황연구로서 오기수(2001)는 접대비 한도의 계산기준이 세법상의 대표적인 계산기준이며 접대비 지출행태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접대비 계산기준의 조세공평성을 분석하였다. 1996년에 접대비 계산기준 중 수입금액 기준 적용률이 단일률에서 3단계 차등률로 전환되었고 기본한도 또한 개정되었으므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표본을 사용하여 매출액 당 접대비와 접대비 손금불산입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5년에 비해 1996년과 1997년의 접대비 손금불산입율은 매출액 규모별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접대비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접대비 계산기준의 수직적인 공평성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손원익(2013)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상장기업들의 접대비 지출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2011까지 접대비 지출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은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당 접대비 규모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접대비 관련 규정이 납세자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서 오기수(2000)는 접대비 관련 세법규정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접대비 한도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한 효과를 모두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세법규정이 개정되었던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접대비 한도가 증감됨에 따라 접대비 지출도 증감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들은 세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 첫 해부터 신속하게 한도증감에 따라 접대비도 증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세법개정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을 접대비 항목만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세법개정이 다른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오기수(2002)는 접대비 한도 축소에 따라 손금불산입을 회피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접대비와 유사한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세법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접대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감소하고, 반대로 접대비가 감소할 때는 복리후생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욱과 전병욱(2010)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한 후 최적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도초과액을 정직하게 전액 손금불산입 하는 것[대안 1]과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것[대안 2],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판매비 등으로 위장 분류하는 것[대안 3] 중 [대안 2]가 선택될 확률은 매우 드물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안 2]를 배제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에 따라 기업이 [대안 1] 또는 [대안 3]중 특정 대안을 선택할 확률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윤성과 이진환(2011)은 접대비의 크기에 따라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접대비의 변동률과 복리후생비의 변동률은 양(+)의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관계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이 접대비 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최원욱 외(2005b)가 있다. 최원욱 외(2005b)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부정부패 등 불건전한 지출에 따른 것이라면 한도에 미달하는 접대비에 비해 수익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한도초과액이 한도미달액과 마찬가지로 수익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다면, 이는 접대비 한도가 기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수익관련성은 한도 내 지출기업의 수익관련성에 비해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접대비 한도초과기업은 한도미달기업에 비해 수익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는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에 비해서 수익관련성이 낮고, 이는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에서 더욱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곽지영 외(2015)는 내부매출거래와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매출거래의 비중과 접대비 한도초과는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매출거래가 존재하는 기업의 접대비 매출기여도가 내부매출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가설의 설정

최원욱 외(2005b)는 접대비 한도초과기업의 수익관련성이 한도내 기업에 비해 더 낮은 것을 보고하여 현행 손금불산입 규정이 획일적 기준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접대비 지출액의 매출공헌도는 기업의 업무적 환경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market)에 경쟁이 존재하는 한 접대비의 지출은 기업경영에 필수적이다.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를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접대비가 기업경영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경쟁은 결국 회사가 속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정도에 따라 기업이 목표로 하는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는 달라질 것이다.

산업의 경쟁도에 따른 기업의 접대비 지출 정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산업의 경쟁도가 높을수록(산업의 집중도가 낮을수록) 접대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기업일수록 매출의 증대를 위해 접대비를 더욱 많이 지출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2013년 접대비 규모 상위 30개 상장사 가운데 제약업체가 9개가 포함되어 있다.³⁾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본 연구에서 산출한 결과, 제약업의 경우 2013년에 0.037로 산업 집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집중도가 낮아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접대비 지출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3) 연합뉴스. 2014. 12. 9. “접대비 상위 상장사에 제약사 대거 포진”.

4) 일반적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20%를 초과하면 상당히 집중된 산업으로 과점시장을 의미한다. 본

그러나 지출한 접대비가 실제 매출액의 증대로 이어지는 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산업 내 경쟁정도가 높아질수록 영업위험이 높아져서 이익의 변동성이 높아지고(LEV 1983), 산업의 수익성 또한 떨어진다(Porter 198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접대비의 지출은 매출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상기에서 언급한 접대비 규모 상위 30위에 속한 9개의 제약회사 중 7개는 매출액이 대형 제약회사의 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중견규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는 접대비가 매출액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⁵⁾ 즉, 접대비의 추가지출이 매출액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기업이 알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접대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현재의 매출액마저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은 수익성이 높고, 초과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많다(Schumpeter 1912 ; Allen and Phillips 2000 ; Ali et al. 2014).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의 매출공헌도는 그렇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의 매출공헌도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 기업에게 시장점유율이 집중되는 과점시장의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이 소비측면에서 동질적이거나 서로 대체성이 매우 큰 제품들을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 차별화 등으로 경쟁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적 산업에 비해 접대비가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과점산업에 속한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기업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이라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를 지출할 것이다. 즉, 접대비 한도초과에 따른 조세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접대비를 지출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손원익(2013)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기업의 약 70%정도가 접대비를 세법상 한도보다 초과지출하고 있으며,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업종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을 때 업종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만약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현행 법인세법의 접대비 한도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이 한도내의 접대비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산업별 허핀달-허쉬만 지수의 최솟값은 0.028로, 제약업의 0.037은 산업의 집중도가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한다.

5) 데일리메디. 2014. 12. 10. “매출은 중견 규모인데 접대비는 대형사보다 많아”.

6)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광업, 농업·임업 및 어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6개 업종이 접대비 한도에 미달하였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제조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7개 업종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원익 2013).

않은 기업 간의 조세 공평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 내 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수 기업에게 시장점유율이 집중되는 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접대비가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에서의 접대비와 매출액과의 관련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산업 내 집중도가 높을수록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접대비와 매출액 관련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접대비 총액의 매출액 관련성은 산업 내 집중도가 높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판매비와관리비는 접대비에 비해 손금불산입 되는 비중이 적으므로 매출관련성이 접대비의 매출관련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최원욱 외(2005b)도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낮은 수익관련성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산업 내 집중도에 따라 달라진다면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의 차이도 달라질 것이다. 만약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서 접대비 한도초과기업의 수익관련성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면, 접대비와 기타판매비와관리비 각각의 수익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산업 내 집중도가 높을수록,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접대비 총액의 매출액 관련성과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다.

IV. 연구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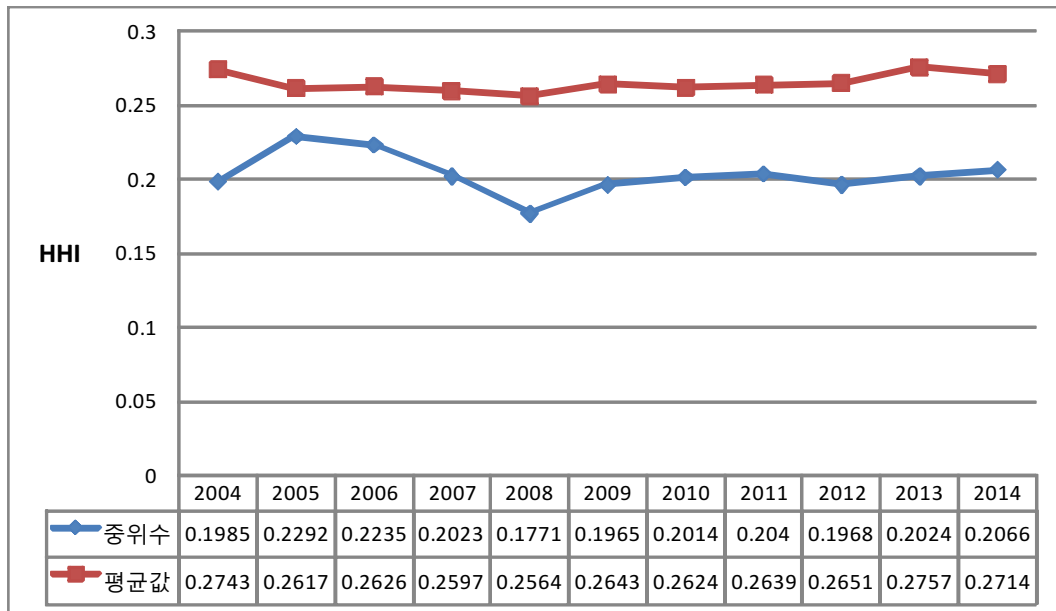
1. 산업집중도의 측정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산업집중도로 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 HH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HI는 산업 내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산업의 총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제곱하여 산업별로 더한 값을 의미한다(Grullon & Michaely, 2007 ; Giroud & Mueller, 2011). HHI를 계산하는 식은 아래 식(1)과 같으며, s 는 i 기업의 i 기의 매출액을 의미하며 S 는 j 산업의 i 기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HHI_{j,T} = \sum_{i=1}^N \left(\frac{s_{i,t}}{S_t} \right)^2 \quad (1)$$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3자리(소분류)를 기준으로 하였고, 위 식(1)의 분모의 산업별 매출액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기업을 총 230개의 산업으로 분류하여 HHI를 측정하였다. HHI가 크다는 것은 산업 내 집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HHI가 작다는 것은 산업 내 집중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산업 내 경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 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HHI의 평균과 중위수 값을 나타낸다.

<그림 1> 연도별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식(2) 및 식(3)을 설정하였다. 먼저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를 접대비지출액과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HHI로 하고 종속변수를 매출액으로 하는 식(2)를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SALES_t = & \alpha_0 + \alpha_1 EE_t + \alpha_2 HHI_t (HHID_t) + \alpha_3 HHI_t (HHID_t) \times EE_t + \alpha_4 ICF_t + \alpha_5 LEV_t \\
 & + \alpha_6 \Delta ASSET_t + \alpha_7 RND_{t-1} + \alpha_8 ADV_t + \alpha_9 LNTA_{t-1} + \alpha_{10} SMALL_t \\
 & + \sum YR + \sum IND + \epsilon
 \end{aligned}
 \tag{2}$$

<변수정의>

- SALES_t : 매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EE_t : 접대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HHI_t : 허핀달-허쉬만 지수
- HHID_t :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중위수와 같거나 큰 경우 1, 아니면 0
- ICF_t :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ΔASSET_t : 총자산 변동액((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전기말총자산)
- RND_{t-1} : 전기 연구개발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ADV_t : 광고선전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LNTA_{t-1} : 전기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SMALL_t :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 YR : 연도더미 변수
- IND : 산업더미 변수

관심변수인 EE는 접대비 총 지출액으로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와 제 조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접대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변수의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매출액과 독립변수인 접대비는 전기말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관심변수 인 HHID는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중위수와 같거나 클 경우에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HHID가 1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은 기업들, 0인 경우에는 산업집중도가 낮은 기업들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HHI를 연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가설 1]은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집중도와 접대비의 상호작용변수(HHI(HHID)*EE)를 독립변수로 도입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식(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는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설 1]의 검증을 위한 식(2)에 기타판매비와관리비(OGS)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OGS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는 다른 판매비와관리비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각각 원가의 기간배분과 예상되는 대손금액에 따른 회계추정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이를 배제하였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였다.

$$\begin{aligned}
SALES_t = & \alpha_0 + \alpha_1 EE_t + \alpha_2 OGS_t + \alpha_3 HHI_t (HHID_t) + \alpha_4 HHI_t (HHID_t) \times EE_t + \alpha_5 ICF_t \\
& + \alpha_6 LEV_t + \alpha_7 \Delta ASSET_t + \alpha_8 RND_{t-1} + \alpha_9 ADV_t + \alpha_{10} LNTA_{t-1} \\
& + \alpha_{11} SMALL_t + \sum YR + \sum IND + \epsilon
\end{aligned} \tag{3}$$

<변수정의>

- SALES : 매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EE : 접대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OGS : 기타판매비와관리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HHI :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D :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중위수와 같거나 큰 경우 1, 아니면 0
 ICF_t :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ΔASSET_t : 총자산 변동액((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전기말총자산)
 RND_{t-1} : 전기 연구개발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ADV_t : 광고선전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LNTA_{t-1} : 전기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 천원)
 SMALL_t :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YR : 연도더미 변수
 IND : 산업더미 변수

통제변수로는 종속변수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최원욱 외(2005b)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기초로 투자활동 현금유출액(ICF), 부채비율(LEV), 총자산 변동액(ΔASSET), 연구개발비(RND), 광고선전비(ADV), 기업규모(LNTA), 중소기업여부(SMALL)의 7개 변수를 사용하였다.⁷⁾ ICF는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투자활동 현금지출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제품의 생산능력이 늘어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최원욱 외 2005b). LEV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계약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익증대를 위한 노력이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DeFond and Jambalvo 1994). ΔASSET은 총자산변동액으로 전기대비 자산증가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종속변수인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총자산의 증감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RND는 연구개발

7) 최원욱 외(2005b)에서는 통제변수로 투자활동 현금유출액(ICF), 매출총이익(GRMARGIN), 중소기업여부(SMALL), 산업별더미 및 연도별더미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원욱 외(2005b)의 게재 전 학회발표논문인 최원욱 외(2005a)에서는 연구개발비(RND)와 기업규모(LNTA)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ND와 LNTA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가분석으로 종속변수에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으므로 통제변수에서 GRMARGIN은 제외하였다.

비의 지출이 미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으며, 비용의 특성 상 당기의 지출보다는 과거의 지출이 미래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므로 전기($t-1$ 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다(한기수와 유상열 1999, 최원욱 외 2005a). ADV는 당기 광고선전비를 전기말 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광고가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신용경 1990). 연구개발비와 달리 광고선전비는 당기 지출이 당기 수익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므로 당기(t 기) 광고선전비를 사용하였다. LNTA는 기업규모에 따른 매출액 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전기말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최원욱 외 2005a). SMALL은 중소기업여부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최원욱 외 2005b). 또한 산업과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별 더미변수(IND)와 연도별 더미변수(YR)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과 한도내에서 지출한 기업의 수익관련성을 비교하므로 접대비한도액을 산출하여 전체표본을 접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접대비한도액은 각 개별기업에 대하여 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한도계산 규정(법인세법 제25조)을 그대로 준용하여 계산하였다.

3.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 1) 금융업에 속하는 상장기업
- 2)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 3)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접대비 합계금액이 0인 기업
- 4) 한국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KIS-VALUE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에서 필요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금융업은 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상이해 다른 업종과의 비교·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추출과정을 거친 결과, 12,482개의 기업-연도 표본이 선정되었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연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극단치가 통계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극단치는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였다.

〈표 2〉 연도별 표본분포

연도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전체 표본	한도초과/전체 (단위 : %)
2004	654	249	903	72.4
2005	692	256	948	73.0
2006	764	262	1,026	74.5
2007	810	275	1,085	74.7
2008	850	295	1,145	74.2
2009	872	319	1,191	73.2
2010	939	311	1,250	75.1
2011	885	288	1,173	75.4
2012	913	320	1,233	74.0
2013	937	306	1,243	75.4
2014	970	315	1,285	75.5
합 계	9,286	3,196	12,482	74.4

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3〉은 실증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주요통계량을 나타낸다. [패널A]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종속변수인 매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값(SALES)의 평균(중위수)은 1.032(0.908)로, 이는 전기말 총자산대비 매출액 비율의 평균(중위수)이 약 103%(91%)라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접대비 총 지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나눈 값(EE)의 평균(중위수)은 0.003(0.002)이다. 기타판매비와관리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나눈 값(OGS)의 평균(중위수)은 0.137(0.092)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HHI의 평균은 0.259, 중위수는 0.197이다. 일반적으로 HHI가 0.2이상이면 그 산업은 과점시장으로 판단하므로, 전체 표본 중 약 50%정도가 과점시장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ICF와 LEV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292(0.165)와 0.415(0.4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말 총자산대비 투자활동현금유출액과 부채비율의 평균이 각각 약 29%와 42%인 것을 의미한다. RND와 ADV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010(0.001)과 0.006(0.001)으로, 전기말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의 평균이 각각 약 1%와 0.6%인 것을 나타낸다.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인 LNTA의 평균(중위수)은 18.602(18.385)로 전체표본의 총자산의 평균은 약 1,1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SMALL 변수의 평균값은 0.498로, 이는 전체 표본 가운데 중소기업이 약 50%인 것을 나타낸다.

〈표 3〉 기술통계량

[Panel A] 전체 표본의 기술통계량 (표본 수=12,482)					
변수명	평균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SALES	1.032	0.908	0.002	12.332	0.710
EE	0.003	0.002	0.000	0.070	0.004
OGS	0.137	0.092	-0.039	4.423	0.184
HHI	0.259	0.197	0.028	1.000	0.218
HHID	0.499	0	0	1	0.500
ICF	0.292	0.165	0.000	23.237	0.444
LEV	0.415	0.406	0.001	6.835	0.254
△ASSET	0.113	0.061	-0.812	23.208	0.395
RND	0.010	0.001	0.000	0.262	0.020
ADV	0.006	0.001	0.000	0.715	0.018
LNTA	18.602	18.385	16.302	22.837	1.279
SMALL	0.498	0	0	1	0.500
[Panel B]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기술통계량 (표본수=9,286)					
변수명	평균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SALES	0.998	0.877	0.002	12.332	0.699
EE	0.004	0.002	0.000	0.070	0.004
OGS	0.145	0.099	-0.039	4.423	0.195
HHI	0.246	0.185	0.028	1.000	0.211
HHID	0.469	0.000	0	1	0.499
ICF	0.297	0.168	0.000	23.237	0.462
LEV	0.408	0.407	0.001	1.199	0.197
△ASSET	0.121	0.063	-0.801	23.208	0.435
RND	0.011	0.002	0.000	0.262	0.021
ADV	0.007	0.001	0.000	0.715	0.019
LNTA	18.551	18.376	16.302	22.837	1.188
SMALL	0.510	1.000	0	1	0.500

〈표 3〉 기술통계량 (계속)

[Panel C]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기술통계량 (표본수=3,196)					
변수명	평균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SALES	1.130	1.028	0.006	10.553	0.733
EE	0.001	0.001	0.000	0.006	0.001
OGS	0.112	0.075	0.003	2.102	0.143
HHI	0.298	0.228	0.028	1.000	0.231
HHID	0.587	1.000	0	1	0.492
ICF	0.281	0.157	0.000	5.723	0.389
LEV	0.435	0.402	0.001	6.835	0.371
△ASSET	0.090	0.053	-0.812	4.951	0.244
RND	0.007	0.000	0.000	0.195	0.015
ADV	0.005	0.000	0.000	0.245	0.014
LNTA	18.751	18.403	16.302	22.837	1.505
SMALL	0.465	0.000	0	1	0.499

<변수정의>

- SALES : 매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EE : 접대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OGS : 기타판매비와관리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HHI : 허핀달-허쉬만 지수
 HHID : 허핀달-허쉬만 지수가 중위수와 같거나 큰 경우 1, 아니면 0
 ICF_t :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ASSET_t : 총자산 변동액((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전기말총자산)
 RND_{t-1} : 전기 연구개발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ADV_t : 광고선전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LNTA_{t-1} : 전기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 천원)
 SMALL_t :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패널 B]와 [패널 C]는 각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과 한도내에서 지출한 기업들의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총자산대비 접대비지출액의(EE) 평균은 0.004인데 반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평균은 0.001로 나타났다.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총자산대비 기타판매비와관리비(OGS)의 평균은 0.145이고,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평균은 0.112로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은 접대비뿐만 아니라 기타판매비와관리비도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활동현금흐름(ICF)의 평균은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0.297)과

한도내 지출기업(0.281)간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RND)와 광고선전비(ADV)는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평균이 각각 0.011과 0.007이고, 한도내 지출기업의 평균은 각각 0.007과 0.005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의 자연로그(LNTA)의 평균은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이 18.551이고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이 18.751로 접대비를 한도내로 지출하는 기업의 규모가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여부(SMALL)의 평균은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이 0.510이고, 한도내 지출기업은 0.465로 접대비를 한도보다 많이 지출하는 기업에 중소기업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패널 A]는 전체 표본에 대한 각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SALES와 독립변수인 EE의 상관계수는 0.094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접대비지출이 많을수록 매출액도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ALES와 HHI간의 상관계수는 0.084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접대비 지출액(EE)과 산업집중도(HHI)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133)를 보이고 있어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접대비를 적게 지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접대비지출액(EE)과 중소기업여부(SMALL)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액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HHI와 중소기업여부(SMALL)도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그 산업에 대기업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인 투자활동 현금유출액(ICF), 부채비율(LEV), 광고선전비(ADV)는 종속변수인 SALES와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이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광고선전비의 지출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당 모형의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한 결과 VIF의 최댓값은 4.34로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접대비 지출액과 산업집중도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추가분석으로, HHI를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수와 같거나 큰 집단(high_HHI, HHID=1)과 중위수보다 작은 집단(low_HHI, HHID=0)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을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과 한도내 지출기업으로 다시 구분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의 접대비 지출액과 매출액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표본을 2×2 분할표(contingency table)로 나타내면 <표 4>의 [패널 B]와 같다.

〈표 4〉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Panel A] 전체 표본(표본수=12,482)

변수	SALES	EE	OGS	HHI	ICF	LEV	△ASSET	RND	ADV	LNTA	SMALL
SALES	1.000										
EE	0.094 (<.0001)	1.000									
OGS	0.257 (<.0001)	0.314 (<.0001)	1.000								
HHI	0.084 (<.0001)	-0.133 (<.0001)	-0.025 (0.006)	1.000							
ICF	0.037 (<.0001)	0.095 (<.0001)	0.081 (<.0001)	0.004 (0.638)	1.000						
LEV	0.181 (<.0001)	-0.060 (<.0001)	-0.036 (<.0001)	0.097 (<.0001)	-0.102 (<.0001)	1.000					
△ASSET	0.252 (<.0001)	0.137 (<.0001)	0.128 (<.0001)	-0.012 (0.188)	0.515 (<.0001)	0.018 (0.043)	1.000				
RND	-0.015 (0.103)	0.167 (<.0001)	0.137 (<.0001)	-0.033 (0.000)	0.089 (<.0001)	-0.098 (<.0001)	0.042 (<.0001)	1.000			
ADV	0.096 (<.0001)	0.119 (<.0001)	0.522 (<.0001)	-0.010 (0.259)	0.047 (<.0001)	-0.045 (<.0001)	0.073 (<.0001)	0.024 (0.007)	1.000		
LNTA	-0.027 (0.003)	-0.359 (<.0001)	-0.151 (<.0001)	0.056 (<.0001)	-0.181 (<.0001)	0.281 (<.0001)	-0.106 (<.0001)	-0.161 (<.0001)	0.001 (0.920)	1.000	
SMALL	-0.115 (<.0001)	0.236 (<.0001)	0.002 (0.827)	-0.068 (<.0001)	0.131 (<.0001)	-0.141 (<.0001)	0.036 (<.0001)	0.147 (<.0001)	-0.071 (<.0001)	-0.644 (<.0001)	1.000

〈표 4〉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계속)

[Panel B] 접대비와 매출액의 상관계수 분석		
	low_HHI	high_HHI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	0.511 <.0001 N=4,933	0.747 <.0001 N=4,353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	0.873 <.0001 N=1,319	0.861 <.0001 N=1,877

- 1) 각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p-value를 나타냄
- 2) 변수설명은 <표 3> 참조

산업집중도가 낮은 경우(low_HHI),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 접대비와 산업집중도간의 상관계수는 0.511로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상관계수인 0.87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차이는 0.362이다. 산업 집중도가 높은 경우(high_HHI)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 접대비와 매출액간의 상관계수는 0.747로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상관계수인 0.86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차이는 0.114이다. 집중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모두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상관계수가 한도내 지출기업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한도초과 기업과 한도내 기업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중도와 상관없이 한도 이내로 지출한 기업에 비해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의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한도 이내로 지출한 기업의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변수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은 단순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로서, 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해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2. 가설 1의 검증결과

본 연구는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전체 표본기업과 전체표본을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과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총 세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접대비는 매출액 및 다른 통제변수에 비하여 금액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회귀계수 자체의 크기만으로는 접대비의 매출 관련

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였다.

<표 5>는 HHI가 중위수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각각 1과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HHID)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칼럼은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EE의 계수 값은 0.032($t=-3.24$)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EE의 계수 값은 0.058($t=5.08$)이고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EE의 계수 값은 0.475($t=18.76$)로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계수 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를 한도내 지출기업에 비해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접대비와 매출의 관련성이 보다 작다는 것으로 최원욱 외(2005b)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산업집중도 변수를 추가한 본 분석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의 접대비와 매출의 관련성 또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던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 산업집중도(HHID)가 접대비의 매출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표본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Intercept	0.000	16.31***	0.000	11.73***	0.000	0.91
EE _t	0.032	3.24***	0.058	5.08***	0.475	18.76***
HHID _t	0.034	3.29***	-0.003	-0.25	0.061	2.67***
HHID _t *EE _t	0.102	9.18***	0.139	10.49***	-0.006	-0.22
ICF _t	-0.100	-10.32***	-0.127	-11.08***	-0.007	-0.49
LEV _t	0.162	18.55***	0.190	19.46***	0.080	4.78***
△ASSET	0.260	27.17***	0.263	23.26***	0.223	14.23***
RND _{t-1}	0.009	1.09	0.020	2.02**	-0.023	-1.54
ADV _t	0.071	8.40***	0.080	8.28***	0.053	3.60***
LNTA _{t-1}	-0.178	-15.28***	-0.147	-10.79***	0.029	1.28
SMALL _t	-0.235	-21.78***	-0.211	-16.88***	-0.350	-18.19***
IND YR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R ²	0.200		0.220		0.359	
N	12,482		9,286		3,196	
F-value	95.42***		80.12***		55.15***	

1) 변수 설명은 <표 3> 참조

2)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6〉 산업집중도(HHI)가 접대비의 매출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표본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Intercept	0.000	16.32***	0.000	11.90***	0.000	0.67
EE _t	0.024	2.13***	0.039	3.00***	0.452	16.55***
HHI _t	0.034	3.18***	-0.010	-0.76	0.044	1.88*
HHI _t *EE _t	0.090	7.17***	0.135	8.80***	0.028	0.94
ICF _t	-0.099	-10.22***	-0.126	-11.03***	-0.007	-0.45
LEV _t	0.162	18.47***	0.190	19.41***	0.079	4.72***
△ASSET	0.260	27.18***	0.264	23.23***	0.224	14.28***
RND _{t-1}	0.004	0.43	0.014	1.37***	-0.026	-1.74*
ADV _t	0.069	8.17***	0.079	8.14***	0.050	3.36***
LNTA _{t-1}	-0.181	-15.46***	-0.151	-11.01***	0.032	1.39
SMALL _t	-0.240	-22.28***	-0.217	-17.38***	-0.350	-18.17***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R						
adj.R ²	0.197		0.216		0.359	
N	12,482		9,286		3,196	
F-value	93.55***		78.37***		55.24***	

1) 변수 설명은 <표 3> 참조

2)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또한 관심변수인 산업집중도와 접대비의 상호작용변수(HHID*EE)의 계수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계수 값은 0.102(t=9.1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HHID*EE의 계수 값은 0.139(t=10.4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 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계수 값은 -0.006(t=-0.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접대비와 매출액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더라도 접대비 한 단위의 추가지출이 매출액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HHID의 계수 값은 전체 표본 기업에서는 0.034(t=-3.24),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에서는 0.061(t=2.67)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고 이윤창출의 기회가 많다는 기존 선행연구(Schumpeter 1912 ; Allen and Phillips 2000. Ali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HHID의 계수 값은 -0.003 ($t=-0.25$)으로 음(-)의 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는 LEV, RND, ADV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가 클수록 매출액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ICF, LNTA, SMALL의 계수 값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에서는 LEV와 ADV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광고선전비의 지출이 클수록 매출액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산업집중도를 연속변수로 반영하여 세 집단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표 6>은 해당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과 한도내 지출기업의 EE 계수가 각각 $0.039(t=3.00)$, $0.452(t=16.55)$ 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에서 모두 접대비가 매출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접대비의 상호작용변수(HHI*EE)의 계수는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 $0.135(t=8.80)$ 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에서는 $0.028(t=0.94)$ 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업이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접대비와 매출액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산업집중도를 더미변수로 반영한 <표 5>와 동일한 결과이다.

추가분석으로, 접대비 단위당 매출액(매출액/접대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산업집중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산업집중도가 접대비 한 단위당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 (4)를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ALEPEE_t = \alpha_0 + \alpha_1 HHI_t + \alpha_2 ICF_t + \alpha_3 LEV_t + \alpha_4 RND_{t-1} + \alpha_5 ADV_t + \alpha_6 LNTA_{t-1} + \alpha_7 SMALL_t + \sum YR + \sum IND + \epsilon \quad (4)$$

<변수정의>

- SALEPEE : 매출액/접대비
- HHI : 허핀달-허쉬만 지수
- ICF_t :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을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LEV_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RND_{t-1} : 전기 연구개발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ADV_t : 광고선전비를 전기말총자산으로 표준화한 금액
- LNTA_{t-1} : 전기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단위 : 천원)
- SMALL_t :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 YR : 연도더미 변수
- IND : 산업더미 변수

<표 7>은 상기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HHI의 계수 값은 0.064($t=7.6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HHI의 계수 값은 0.009($t=0.52$)로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는 산업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접대비의 매출공헌도가 증가하는 반면, 접대비를 한도 이내로 지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매출공헌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당 분석결과 또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도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접대비와 매출액의 관련성이 높다는 [가설 1]을 지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산업집중도와 접대비 단위당 매출액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표본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Intercept	0.000	-21.72***	0.000	-30.47***	0.000	-11.53***
HHI _t	0.052	6.01***	0.064	7.64***	0.009	0.52
ICF _t	0.016	1.86***	0.028	3.25***	0.008	0.50
LEV _t	0.035	3.89***	0.084	9.80***	-0.017	-0.92
RND _{t-1}	-0.028	-3.18***	-0.027	-3.14***	0.007	0.44
ADV _t	-0.027	-3.16***	-0.014	-1.66***	-0.003	-0.17
LNTA _{t-1}	0.306	26.64***	0.458	40.51***	0.384	17.18***
SMALL _t	-0.033	-3.02***	-0.123	-11.13***	-0.092	-4.4***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R						
adj.R ²	0.147		0.384		0.219	
N	12,482		9,286		3,196	
F-value	72.71***		194.21***		30.81***	

1) 변수 설명은 <표 3> 참조

2)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3. 가설 2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중도가 높을 경우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높아진다면, 기타판매비와 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과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8>은 해당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경우 접대비(EE)의 계수 값

은 0.018($t=1.82$)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며, 기타판매비와관리비(OGS)의 계수 값은 0.261($t=15.4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경우 접대비(EE)의 계수 값은 0.438($t=5.29$)이고 기타판매비와관리비(OGS)의 계수 값은 0.238($t=10.10$)로 오히려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산업집중도(HHID)가 접대비와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 표본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Intercept	0.000	13.22***	0.000	9.38***	0.000	-0.36
EE _t	-0.005	-0.57	0.018	1.82*	0.438	5.29***
OGS _t	0.271	17.43***	0.261	15.48***	0.238	10.10***
HHID _t	0.063	6.31***	0.031	2.49**	0.070	1.76*
HHID _t *EE _t	0.050	3.24***	0.080	4.16***	0.004	0.06
ICF _t	-0.098	-2.77***	-0.124	-3.01***	-0.013	-0.60
LEV _t	0.152	9.04***	0.183	16.35***	0.066	3.49***
△ASSET	0.246	5.01***	0.251	4.81***	0.208	10.27***
RND _{t-1}	-0.015	-1.66*	-0.003	-0.36	-0.043	-2.90***
ADV _t	-0.053	-1.67*	-0.034	-0.90	-0.084	-3.80***
LNTA _{t-1}	-0.153	-11.42***	-0.127	-8.29***	0.056	2.19**
SMALL _t	-0.210	-17.27***	-0.185	-12.69***	-0.325	-15.30***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R						
adj.R ²	0.244		0.261		0.388	
N	12,482		9,286		3,196	
F-value	119.39***		97.48***		60.58***	

1) 변수 설명은 <표 3> 참조

2)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한편,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산업집중도와 접대비의 상호작용변수(HHID*EE)의 계수 값은 0.080($t=4.1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집중도를 반영하였을 때는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과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HHID*EE의 계수 값은 0.004로 양(+)의 관련성을 보이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산업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접대비의 매출액 기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접대비를 한도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과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는 LEV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고, ICF, LNTA, SMALL의 계수 값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에서는 LEV와 LNTA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고, RND, ADV, SMALL의 계수 값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표 9>는 산업집중도를 연속변수로 반영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EE의 계수 값은 0.005($t=0.37$)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즉, 접대비 자체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산업집중도(HHI)가 접대비와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전체 표본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Intercept	0.000	13.87***	0.000	9.75***	0.000	-0.08
EE _t	-0.012	-1.06	0.005	0.37	0.422	15.17***
OGS _t	0.284	27.66***	0.279	23.82***	0.247	12.15***
HHI _t	0.055	5.05***	0.022	1.61	0.045	1.81
HHI _t *EE _t	0.063	4.99***	0.096	6.21***	0.029	0.94
ICF _t	-0.012	-1.20	-0.011	-0.94	-0.008	-0.49
LEV _t	0.166	18.92***	0.197	19.98***	0.081	4.68***
△ASSET	0.075	7.78***	0.086	7.42***	0.022	1.37
RND _{t-1}	-0.033	-3.85***	-0.021	-2.10**	-0.049	-3.14***
ADV _t	-0.083	-8.59***	-0.073	-6.58***	-0.084	-4.32***
LNTA _{t-1}	-0.148	-12.59***	-0.119	-8.60***	0.052	2.15***
SMALL _t	-0.236	-21.71***	-0.210	-16.55***	-0.363	-18.13***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R						
adj.R ²	0.189		0.202		0.314	
N	12,482		9,286		3,196	
F-value	86.64***		70.08***		44.06***	

1) 변수 설명은 <표 3> 참조

2)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HHI*EE$ 의 계수 값이 $0.096(t=6.21)$ 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를 고려하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도 여전히 접대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EE 계수 값은 $0.422(t=15.17)$ 로 1%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였으나, $HHI*EE$ 의 계수 값은 $0.029(t=0.9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 8>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산업집중도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추가분석

본 연구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산업집중도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매출액의 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의 증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익관련성에 대한 정의를 이익관련성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형 (2)의 종속변수로서 수익이 아닌 이익변수인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여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가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10>은 산업집중도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접대비와 매출총이익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EE 의 계수 값은 $0.180(t=17.65)$ 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의 EE 의 계수 값은 $0.062(t=2.15)$ 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매출액을 사용했을 때와 달리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계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접대비 지출이 매출총이익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변수인 산업집중도와 접대비의 상호작용변수 ($HHID*EE$)의 계수 값은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 $0.175(t=14.67)$ 이고 한도내 지출기업에서 $0.082(t=2.61)$ 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종속변수를 매출액으로 하였을 때와 달리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에서도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의 매출총이익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E 의 계수 값과 $HHID*EE$ 의 계수 값의 합을 계산하여 보면, 산업집중도를 고려할 때는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접대비의 매출총이익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산업집중도(HHID)가 접대비의 매출총이익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표본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Intercept	0.000	4.05***	0.000	2.47**	0.000	-9.43***
EE _t	0.161	18.27***	0.180	17.65***	0.062	2.15**
HHID _t	-0.080	-8.79***	-0.101	-9.12***	-0.046	-1.77*
HHID _t *EE _t	0.141	14.41***	0.175	14.67***	0.082	2.61***
ICF _t	-0.033	-3.83***	-0.061	-5.92***	0.097	5.53***
LEV _t	-0.041	-5.23***	-0.047	-5.32***	-0.197	-10.40***
△ASSET	0.150	17.65***	0.155	15.29***	0.263	14.72***
RND _{t-1}	0.079	10.50***	0.078	8.84***	0.001	0.05
ADV _t	0.438	58.76***	0.420	48.48***	0.078	4.64***
LNTA _{t-1}	-0.008	-0.74	0.006	0.52	0.312	11.94***
SMALL _t	-0.074	-7.77***	-0.084	-7.53***	0.035	1.60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R						
adj.R ²	0.3698		0.3723		0.1687	
N	12,482		9,286		3,196	
F-value	222.91		167.89		20.64	

1) 변수 설명은 <표 3> 참조

2)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11>은 산업집중도를 연속변수로 반영한 분석결과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과 한도내 지출기업의 EE의 계수 값은 각각 0.203(t=17.33), 0.115(t=3.71)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였다. 산업집중도를 연속변수로 반영한 경우에도 <표 10>과 마찬가지로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의 EE의 계수가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HHI*EE의 계수 값은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 0.075(t=5.41)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에서는 -0.009(t=-0.28)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도 <표 10>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에서의 접대비의 매출총이익 관련성이 한도내 기업보다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산업집중도(HHI)가 접대비의 매출총이익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전체 표본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		접대비 한도내 기업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표준화계수	t-value
Intercept	0.000	4.99***	0.000	3.58***	0.000	-9.46***
EE _t	0.195	19.48***	0.203	17.33***	0.115	3.71***
HHI _t	-0.019	-2.01**	-0.048	-3.98***	0.021	0.79
HHI _t *EE _t	0.041	3.64***	0.075	5.41***	-0.009	-0.28
ICF _t	-0.033	-3.83***	-0.060	-5.80***	0.096	5.50***
LEV _t	-0.038	-4.82***	-0.043	-4.91***	-0.200	-10.53***
△ASSET	0.153	17.96***	0.158	15.44***	0.263	14.68***
RND _{t-1}	0.079	10.40***	0.077	8.64***	0.001	0.07
ADV _t	0.442	58.90***	0.424	48.52***	0.078	4.63***
LNTA _{t-1}	-0.024	-2.30**	-0.013	-1.04	0.307	11.76***
SMALL _t	-0.077	-7.97***	-0.089	-7.85***	0.031	1.40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R						
adj.R ²	0.360		0.360		0.167	
N	12,482		9,286		3,196	
F-value	213.69***		159.09***		20.42***	

1) 변수 설명은 <표 3> 참조

2)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접대비 한도내 지출기업 뿐만 아니라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도 접대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총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내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접대비의 매출총이익 관련성이 증가하며 이러한 성향은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시장경쟁이 존재하는 한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접대비의 지출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의 집중도가 접대비의 매출에 대한 공헌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2004년부

터 2014년까지의 기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기업도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한도 이내로 접대비를 지출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과 접대비 이외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를 기업의 영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산업특성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도 매출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획일적인 접대비 한도 기준은 한도내의 접대비 지출만으로도 충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온다.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가 손금부인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도 접대비 지출이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이를 상쇄시킬 만큼 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집중도에 따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달라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 한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기업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여, 접대비 한도의 산정에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기업의 특성 중 하나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손금불산입 관련 입법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는 접대비 한도액 산출에 있어서 측정 오차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의 미사용액은 한도액과 상관없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접대비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HHI변수에도 본질적인 측정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윤성 · 이진환. 2011.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 101-132.
- 곽지영 · 김상일 · 김경태. 2015. “내부매출거래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 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 39-65.
- 손원익. 2013.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 21-41.
- 송쌍중. 1995. 『세무회계론』. 조세통람사.
- 신용경. 1990. “호텔산업의 매출액과 광고비 및 접대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제2권 : 3-11.
- 오기수. 2000. “접대비 관련 세법개정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 67-89.
- _____. 2001. “접대비 계산기준의 개정에 따른 조세공평 분석”.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 35-58.
- _____. 2002. “접대비 손금한도액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제1호 : 157-184.
- 최원욱 · 김갑순 · 이영한. 2005a.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2005년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최원욱 · 김갑순 · 이영한. 2005b.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지출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2권 제4호 : 87-121.
- 최원욱 · 전병욱. 2010. “접대비 회계처리의 이론적 분석”. 세무학연구 제27권 제1호 : 9-33.
- 한기수 · 유상열. 1999. “접대비 지출과 기업특성”. 경영연구 제33권 통권 136호 : 25-41.
- 홍정화 · 이태호. 2004.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접대비 지출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21권 제4호 : 97-129.
- Ali, A., S. Klasa, and E. Yeung. 2014. Industry concentration and corporate disclosure polic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 : 240-264.
- Allen, J., and G. Phillips. 2000. Corporate equity ownership, strategic alliances, and product market relationships. *Journal of Finance* 55 : 2791-2815.
- DeFond, M. L., and J. Jambalvo. 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 145-176.
- Giroud, X., and H. Mueller. 2011. Corporate governance,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equity prices. *Journal of Finance* 66(2) : 563-600.
- Grullon, G. and R. Michaely. 2007. Corporate payout policy and product market Competition. Working Paper.
- Schumpeter, J. 1912.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Effect of Industry Concentration on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Won-Wook Choi* · Hyun-Ji Lim**

〈Abstract〉

In Korea, corporate entertainment expenses are not always tax deductible. Corporate Income Tax Law posits a limit to the tax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because any excessive entertainment expense that does not contribute to revenue generation should not be tax deductible. However, the deductible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se is a linear function of revenue, without consideration of firm-level and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Since firms spend entertainment expenses to increase sales and market share, the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should vary with the level of industry concentration. This study focuses on how industry concentration affects the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both within and above the limit. We find the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is higher for firms in more concentrated industries.

Using a sample of listed companies firms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between 2004 and 2014, we find a stronger association between revenue and entertainment expense in industries with higher concentration ratios as an indicator that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se on sales increase is greater when the industry is concentrated among fewer companies.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level of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is closer to that of selling & administrative expenses in concentrative industry. Our findings imply that non-deductible entertainment expense for firms in highly concentrated industries may have indeed contributed to revenue increase.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o regulators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industry characteristic matters for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Without consideration of industry characteristic, not all the revenue-generation entertainment expenses are recognized as tax deductibles in highly concentrated industries. This can aggravate firms to impute the entertainment expenses to customers by increasing price level.

〈Key words〉 Entertainment expense, Industry concentration, Revenue contribution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wonchoi@yonsei.ac.kr, First Author

** Ph. D,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hyulim00@gmail.ac.kr, Corresponding Author